

2022년 스타트업 파트너 연계 육성 지원 창업기업 모집 공고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중소·중견기업과의 협업 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2022년 스타트업 파트너 연계 육성 지원」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24일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I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과 협업하여 기업 간 애로사항 해결과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신규 창업 아이디어 발굴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 모집대상

① 수요기업(스타트업) : 창업 7년 이내 기업

- 수요기업 : 뉴딜 및 특화분야, 4차산업 관련 분야 도입, 신규아이템, 제품개선, 시장 진출 등을 희망하는 기업

② 공급기업(파트너사) : 창업 5년 이상 기업

- 가능기업 : 수요기업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공동프로젝트 분야〉

연번	구분	신청대상
1	파트너 프로젝트	센터의 파트너 기업 매칭을 희망하는 공급·수요기업 *센터에서 매칭
2	자율형 프로젝트	사업아이템의 고도화 및 공동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공급·수요기업 매칭을 완료한 기업

□ **공고기간** : 2022년 2월 24일(목) ~ 3월 24일(목)

□ 지원내용

- 공동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최대 40,000천원 지원
- 기업 역량 강화 교육 및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지원

II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① 수요기업(스타트업) : 창업 7년 이내 기업

- 수요기업 : 뉴딜 및 특화분야, 4차산업 관련 분야 도입, 신규아이템, 제품개선, 시장 진출 등을 희망하는 기업

② 공급기업(파트너사) : 창업 5년 이상 기업

- 가능기업 : 필요기업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재창업기업 포함)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5.3.11. 이후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창업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 제출

<신청 제외대상>

①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은 신청 가능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 등은 신청 가능

④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⑥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III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공동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 지원 기간 : 최종 선정 및 협약 후 ~ 2022년 10월
- 지원 규모 : 총 4개사 내외
- 사업화 자금 : 비즈니스모델링(BM), 시제품 제작비용, 제품 및 디자인 개선, 기술정보 및 마케팅 비용 등의 사업화 자금 최대 40,000천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배정 및 협약체결

** 사업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해당

< 지원항목 >

분야	분야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비	자체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 전문 업체 의뢰비 등
	제품 및 디자인 개선	기존 제품 성능 및 디자인 개선 등
	지재권 취득비	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비용
	재료비	재료·원료 구입비
	마케팅비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품 카탈로그 제작 등
운영비	컨설팅, 멘토링비	사업모델 개발, 개선 및 공동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스타트업과 파트너 기업 간의 멘토링 및 컨설팅 *10,000천원 한도
	회계정산비	회계 정산 수수료 등 사업 정산 비용

- 사업비 구성 : 지원금의 30% 창업기업 대응자금 자부담(현금 10%, 현물 20%)
- 현물 인정 기준 : 인건비(대표 및 고용인력), 보유 기자재(취득가액의 10%),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사업비 구성 예시>

총 사업비	지원금	창업기업 자부담	
		현금	현물
5,200만원	4,000만원	400만원	800만원
	100%	10%	20%

○ 기업 역량 강화 교육

- 목 적 : 기업에 필요한 분야를 수요 조사하여 맞춤형 창업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 일 정 : 2022년 4월 ~ 10월 중
- 지원내용 : 세무/회계, 인사/노무, 투자 등 창업기업 관심분야

일반 창업 교육	⇒	역량 강화 교육	⇒	기업 심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노무, 투자세무/회계 등 ○ 창업기초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조직구성/관리 ○ 원가관리와 경영설계 ○ 투자유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전략 및 분석 ○ 투자유치 실전과 IR
임직원 대상		대표 및 임직원 대상		대표 및 임직원 대상

○ 네트워킹 프로그램

- 목 적 :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수혜기업의 애로사항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 운영
- 일 정 : 2022년 4월 ~ 11월 중 1회 이상
- 내 용 : 창업기업, 파트너 기업, 전문가(도내 대학, R&D 및 공공 기관 등) 간담회 및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내용
기업-파트너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파트너 기업의 협업 추진 사항 공유 · 애로사항 청취
기술 교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 세미나 및 정보 공유 · 전문가 기술상담회(애로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

IV 신청 및 접수

□ 공급기업(파트너사)신청접수

- 공급기업(파트너사) 신청기간 : 2022년 2월 24일(목) ~ 3월 7일(월)
-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온라인 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불가)
- 접수처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신청 페이지(<http://event.jbci.or.kr>)
- 사업문의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성장육성팀 ☎ (063) 220-8916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 신청 시, 해당하는 지원 분야 1개 선택

연번	구분	신청대상
1	파트너 프로젝트	센터의 파트너 기업 매칭을 희망하는 공급·수요기업 *센터에서 공급·수요기업 매칭
2	자율형 프로젝트	사업아이템의 고도화 및 공동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공급수요기업 매칭을 완료한 기업

< 온라인 신청절차 >

- ① 온라인 신청 페이지 접속 → ② '사업신청' 메뉴 선택 → ③ 스타트업 파트너 연계 육성 '신청하기' 선택 → ④ 기본정보 입력(특수문자 입력 시 제출 불가) → ⑤ 신청서 업로드(용량제한 30MB 유의, 파일형식 PDF) → ⑥ '온라인 접수' 제출 → ⑦ '신청-접수확인' 메뉴 선택 → ⑧ 신청정보 (신청사업명, 이름, 휴대전화, 비밀번호) 입력 → ⑨ '접수현황확인'

<공급기업(파트너사) 준비 및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1	■ 신청서	필수	1부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1부	
구분	증빙서류		필수여부	비고
1	■ 대표자 신분증		필수	-
2	■ 개인	사업자등록증	필수	-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3	■ 실적자료(매출, 수출, 투자, 고용 등)		선정 후 제출	해당자
4	■ 기타자료(지식재산권, 벤처기업확인서 등)		선정 후 제출	해당자

□ 수요기업(스타트업)신청접수

- 수요기업(스타트업) 신청기간 : 2022년 3월 11일(금) ~ 3월 24일(목)
 -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온라인 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불가)
- 접수처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신청 페이지(<http://event.jbci.or.kr>)
- 사업문의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성장육성팀 ☎ (063) 220-8916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 신청 시, 해당하는 지원 분야 1개 선택

연번	구분	신청대상
1	파트너 프로젝트	센터의 파트너 기업 매칭을 희망하는 공급·수요기업 *센터에서 공급·수요기업 매칭
2	자율형 프로젝트	사업아이템의 고도화 및 공동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공급·수요기업 매칭을 완료한 기업

< 온라인 신청절차 >

- ① 온라인 신청 페이지 접속 → ② '사업신청' 메뉴 선택 → ③ 스타트업 파트너 연계 육성 '신청하기' 선택 → ④ 기본정보 입력(특수문자 입력 시 제출 불가) → ⑤ 신청서 업로드(용량제한 30MB 유의, 파일형식 PDF) → ⑥ '온라인 접수' 제출 → ⑦ '신청·접수확인' 메뉴 선택 → ⑧ 신청정보 (신청사업명, 이름, 휴대전화, 비밀번호) 입력 → ⑨ '접수현황확인'

<수요기업(스타트업) 준비 및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1	■ 신청서	필수	1부	
2	■ 사업계획서	필수	1부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1부	
구분	증빙서류		필수여부	비고
1	■ 대표자 신분증		필수	-
2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증명원(폐업 이력 있을 시)	필수	-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증명원(폐업 이력 있을 시)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필수	-
4	■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필수	2021년도
5	■ 실적자료(매출, 수출, 투자, 고용 등)		선택	해당자
6	■ 기타자료(지식재산권, 벤처기업확인서 등)		선택	해당자

V

심사 및 추진일정

□ 심사방법 및 절차

< 심사 및 일정 >



① (요건검토) 신청자의 신청 자격검토 과정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② (심사운영)

- 서류평가 : 사업계획 적정성, 파급성, 중복지원 등 검토
- 파트너 매칭 : 서류평가 통과

한 파트너 프로젝트 분야 매칭

- 현장점검 : 수요·공급 기업 간 현장 점검으로 적합 여부 판단
- 발표평가 : 기업(파트너) 역량 및 사업화 심층평가

③ (선정안내) 지원대상자 및 후보자 선정, 사업화지원금 최종 확정 안내

④ (지원금 활용 계획) 확정 지원금 활용 계획 작성 및 제출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VI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류접수 시 마감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
-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가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끝.

참고 1**제출서류 발급**

분류	제출서류명(사본 가능)	발급처
필수서류	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㉔-1 국세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㉔-2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https://www.gov.kr)
	㉔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소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선택서류	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 대표자 직접 신청시 생략 가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참고 2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 창업여부 기준

창업이력	신청기업 구분 (판단기준)	상세 구분			창업여부	
상속/증여	개인 / 법인	기존의 개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여부 무관	등종유지		불인정	
			이종창업		창업	
창업이력 있음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불인정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등종창업	이종창업		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동종창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등종창업	이종창업		창업
				동일인인 경우		불인정
			동일인이 아닌 경우		창업	
			법인전환	기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창업
			등종창업	동일인인 경우	폐업 3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업
			동일인이 아닌 경우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자회사 해당			불인정		
	자회사 해당되지 않음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업		

1. "기존 사업을 폐지하고"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
2.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
3. "동일인"이란,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
 - 가. 법안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
4.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
5. "자회사"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
6. 중소기업 폐업이후 3년 이후의 동종 업종 개시는 창업 인정(부도·파산 2년)
7.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참고 3**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124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